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노인 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라.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마.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계약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산정지침 따라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간식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5.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나.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다.사고 또는 손해 예방

라.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마.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

바.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6.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보호자(또는 보증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마.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바.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시설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7.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시설에 즉시 알릴 의무

나.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다. 이용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라.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 금지

마.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시설에 제공

바.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사.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있어 종사자의 부정이 있을 시 즉시 시설에 알릴 의무

8. 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의 사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으며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본 시설 또는 이용자가 계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마. 본 시설 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사.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아.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때

9. 배상책임

가.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게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된 사항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등의 비용변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의 개정으로 인해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비급여 항목 등의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전 ①, ②, ③호에 의거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1.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단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참조한다.

① 방문요양사업

- 세면, 구강관리, 목욕, 배설,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의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 밑반찬, 김치 담그기,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정서지원서비스
- 치매관리서비스
-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 여가지원서비스
- 목욕지원서비스
- 위생환경관리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기능회복서비스
- 상담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병원동행서비스
- 위생청결서비스
- 인지기능프로그램
- 신체기능프로그램
- 사회적응지원서비스
- 심리정서지원서비스
- 특화사업
- 어르신교육지원

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이 산정되며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비 급 여 항목			주야간보호 비용 (식사 : 1일 1식 / 간식 : 1일 1식)			비고
해당여부	Y	N	1(식)	산출기초	20일 기준	
식재료비_점심	●		2,500	2,500 X 20일	50,000	
식재료비_저녁	●		2,000	2,000 X 20일	40,000	희망시
간식비용	●		500	500 X 2회 X 20일	20,000	
이 · 미용비		●	-	-	-	

※ 상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물가변동, 이용일수,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항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고 이용자는 교부받은 명세서를 확인 후, 이용한 이용료(법정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에 대하여 매월 단위로 시설의 계좌로 납부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편도 송영

거리 5Km기준으로 1일 15,000원 또는 20,000원의 비급여(중식 및 간식대 포함) 비용을 부담한다. 저녁 식대비는 미포함이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관리) 제 2항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시설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